

# 재단법인충청북도전통의약품연구개발지원센터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2002년 10월 31일

나. 회부일자 : 2002년 10월 31일

3. 제안 이유

- 생명과학산업과 전통의약을 21세기 지역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낙후된 지역산업의 재편을 통하여 고부가 가치화를 추구하고자
- 재단법인충청북도전통의약품연구개발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4. 주요 골자

- 법인명칭을 “재단법인충청북도전통의약품연구개발지원센터”로 함 (제2조)
- 전통의약품 및 한방신약 연구개발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제5조)
- 지원센터의 재산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출연을 원하는 기관단체의 출연금 등으로 함 (제6조)

- 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제7조)
- 지원센터 해산시에는 잔여재산을 정관에 의하여 당해 기관에 귀속하도록 함 (제9조)
- 지원센터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 또는 겸임근무할 수 있도록 함 (제10조)

## 5. 검토 의견

- 생명과학산업과 전통의약을 우리도의 핵심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낙후된 지역산업의 재편을 통하여 고부가가치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재단법인의 설립과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 없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 효율적인 재단운영을 위하여는 업무감독과 필요시 조사, 감사 등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별개의 조항으로 삽입해야 할것과
- 중앙, 도, 시군 등에서 출연하여 조성된 출연금 외에 발생하는 기타 수입금에 대한 처리사항이 검토되어야 할것으로 사료 됩니다.
- 또한 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사항은 제4조 제10호와 제9조가 중복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